



# 동물운송세부규정 고시(안) 입안예고

## 1. 제정이유

‘동물보호법’ 제8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운송차량의 구조 및 설비기준과 그 밖에 동물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동물운송세부규정에 따른 고시의 목적, 용어의 정의, 동물운송의 일반원칙을 정함(안 제1조 내지 제2조).

나. 동물운송의 일반원칙 및 운송하여서는 아니되는 동물의 범위와 그 밖의 운송에 적합한 운송 선발내용을 정함(안 제3조 내지 제4조).

다. 동물 운송수단의 구비조건, 적재·하역시설의 보조시설 및 적재·하역시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5조 내지 제6조).

라. 동물 운송 또는 운송을 위한 이동시 취급 요령 및 이동시 이동보조 기구의 제한적 활용 및 사용시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7조 내지 8조).

마. 동물운송 시에 동물의 종류와 크기에 적합한 운송 밀도 기준을 정함(안 제9조).

### 〈동물운송세부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동물운송차량의 구조 및 설비기준과 그 밖에 동물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동물운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라 함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포유류’ 중 소, 돼지와 제2항의 ‘조류’ 중 닭과 오리를 말한다.
2. “운송”이라 함은 차량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동물을 이동시키는 것을

말하며, 동물의 적재·휴식·하역, 운전 등 출발부터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적재”라 함은 동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송차량에 싣는 것을 말한다.

4. “하역”이라 함은 동물을 운송차량에서 내리는 것 또는 이에 부수하는 작업을 말한다.

5. “운송용 우리”라 함은 동물운송 시 동물을 가두는 용기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

6. “이동보조기구”라 함은 운송동물의 이동에 사용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

7. “운송밀도”라 함은 동물운송 시 일정 적재공간에 가두어지는 동물의 수 또는 무게를 말한다.

**제3조(동물운송의 일반원칙)** 동물 운송자(이하 “운송자”라 한다.)는 운송 동물(이하 “동물”이라 한다.)의 사료, 음수, 배설, 환경 및 안전에 주의하여야 하며, 동물이 놀라거나 고통 또는 상해를 입지 않도록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 동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1. 운송자는 운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송 전에 동물 적재 공간, 휴식, 물 및 사료, 운송 중의 동물관찰, 질병관리 및 비상대책 등 운송계획을 점검하여야 한다.

2. 운송에 적합한 동물을 선발한다.

3. 운송차량은 동물이 부상을 당하거나, 고통스럽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설계·유지하여야 한다.

4. 적재 및 하역 시설은 동물이 부상을 당하거나, 고통스럽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이동될

수 있도록 설계·유지·운영되어야 한다.

5. 운전은 동물의 움직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갑작스러운 방향전환이나 정지 없이 부드럽게 하여야 한다.

6. 운송자는 동물의 적재가 완료되면 즉시 운송차량을 출발시켜야 하며, 운송 중에 주기적으로 동물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7. 운송 보조자는 동물운송과 관련된 일에 경험이 많거나 관련된 훈련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8. 운송자는 필요할 경우, 운송 중에 동물에게 물과 사료를 급여하고 적절한 간격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제4조(운송에 적합한 동물선발)** 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동물은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호의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1. 아프거나, 부상중이거나, 약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지친 동물

2. 도움 없이는 혼자서 일어설 수 없거나 각 다리에 체중을 실을 수 없는 동물

3. 상처가 크거나 탈장한 동물

4. 운송일 기준으로 평균 임신기간의 90%가 경과되었거나 10일 이내에 출산한 동물

5. 탯줄을 잘라낸 자리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은 신생 소, 돼지

6. 부상 또는 질병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부상 또는 질병과 관련한 실험대상 동물 또는 운송 시 수의사의 감독을 받을 경우

② 운송자는 동물의 상대적 친숙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을 적용하

여야 한다.

1. 어미와 새끼처럼 유대관계가 있는 동물과 같이 길러진 동물들은 그룹으로 함께 운송되어야 한다.

2. 중대한 공격성을 보일 가능성이 없으면 같은 종의 동물은 섞을 수 있다. 다만 공격성이 있는 개체는 격리되어야 한다.

3. 어린 새끼를 돌보는 어미를 제외하고, 어리거나 작은 동물은 성숙되거나 큰 동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4. 뿔을 가진 동물은 친숙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뿔이 없는 동물과 섞으면 안된다.

5. 다른 종의 동물은 친숙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섞으면 안된다.

**제5조(운송차량 구비조건)** 운송차량, 운송용 우리 및 운송 시설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 청소와 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2. 적재공간은 동물의 종류, 크기 및 운송여건에 따라 그 면적과 높이를 적절히 맞도록 한다.

3. 동물이 도망하거나 차량에서 떨어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4. 동물이 태양광 또는 비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운송차량에 천 등으로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돼지 운송 시에는 우리 내부에 동물을 구획하는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함 면적이 10㎡ 이하일 경우는 칸막이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6. 필요하다면 운송차량 적재공간에 온도 조절 및 환기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7. 바닥은 미끄럽지 않아야 하며 분뇨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하거나 충분한 깔짚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닥에 깔아야 한다.

8. 10kg 이하의 돼지, 생후 6개월 이하의 송아지를 운송할 경우 반드시 바닥에 깔짚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를 깔아야 한다.

7. 각각의 동물이 방해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 있어야 하며 복층구조의 경우 동물이 기립한 상태에서 아무런 장애 없이 최대한 머리를 들 수 있어야 한다.

**제6조(적재 및 하역)** 운송자 및 그 보조자는 적재 및 하역할 때에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이 받는 부상, 고통, 흥분,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재·하역하여야 한다.

2. 시설의 바닥은 미끄럽지 않아야 하며, 동물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양 측면에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운송 중 동물관찰,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4. 적재 및 하역 시설은 동물 종과 크기를 감안하여 사용하고 운송차량과의 경사도는 가급적 수평으로 하여야 한다.

5. 복층구조로 된 운송차량 및 복층 운송용기에 적재 및 하역을 위하여 동물이 떨어지거나 도망하지 않는 구조로 동물이 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보조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6.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명 하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7. 하역 즉시 분변 및 깔짚 등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운송차량을 세척하며 필요한 경우 소독을 할 수 있다.

8. 운송도중 아프거나 부상을 입거나, 불구가 된 동물은 적절하게 치료되거나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운송동물의 취급)** 동물이 운송 또는 운송을 위해 이동할 때에는 동물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호의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1. 때리거나 끝이 날카로운 기구로 찌르는 행위
2. 눈, 항문부위, 꼬리 등 민감한 신체부위를 누르거나 비트는 행위
3. 머리, 귀, 뺨, 다리, 털 등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여 동물을 들어올리거나 끄는 행위
4. 동물을 실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 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리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5.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함, 큰소리를 내어 이동하는 행위
6. 동물 및 사람에게 위해가 되는 긴급한 상황 발생시

**제8조(이동 보조기구)** ① 운송자 및 그 보조자는 동물을 강제적으로 이동하기 위해 물리적인 힘이나 보조기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다만 깃발, 금속 딸랑이 등은 동물의 이동을 지시하거나 격리하기 위한 방법에 한정되어 사용할 수 있다.

② 전기 쇼크를 줄 수 있는 보조기구는 일상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제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성숙한 소 또는 성숙한 돼지가 이동하려 하지 않거나 이동할 공간이 충분할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엉덩이 부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동물이 전기충격에 반응하지 않거나 이동에 실패했을 경우, 반복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동물 및 사람에게 위해가 되는 긴급한 상황 발생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운송밀도)** 운송자는 동물 운송 시에는 동물의 종류와 크기에 적합한 공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동물별 운송밀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부 칙 -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동물별 운송밀도 기준(닭)

구분	소요면적
병아리	21~25cm <sup>2</sup> /수
1.0g 미만	180~250cm <sup>2</sup> /kg
1~<2g	160~210cm <sup>2</sup> /kg
2~<3g	170~230cm <sup>2</sup> /kg
3~<5g	115cm <sup>2</sup> /kg
5g 이상	105cm <sup>2</sup> /kg